



제 1232호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 고

- 공고 제2015- 65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10
- 공고 제2015- 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11
- 공고 제2015- 660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2
- 공고 제2015- 6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2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8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2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0

고 시

- 고시 제2015- 53호 도로명주소 고시 22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4월 17일

남동구 규칙 제8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
 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
 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별 :)	연락처			
전체 유급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소재지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된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전체서비스 수혜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 수혜 자 비 율	%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매출액		천원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연도) - (연번)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간 :

위 기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	조 직	기 관 명				대표자명				
		(주된)소재지								
		주 된 목 적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업 종								
		연계기업명								
	근 로 자	구 분		남		여		계		
		총 근로자 수(A)								
		취약 계층 근로자수(B)								
		비율(B/A)								
		연 령 별	20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5세 미만							
			55세 이상							
		고용 계약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월평균 임 금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 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이하							
		회 계	총 수입: 원					총비용(지출): 원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노무비 (인건비)	교육 훈련비	기타
	원(%)			원(%)						
	민간 시장		공공 시장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금액	금액	금액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사업추진실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일 반			
		총계:		명		총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저소득층	명	저소득층	명				
		고령자	명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장애인	명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분야 내 외							
		서비스 제공 가 격	평 균	원	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	총 계	명		
			일반구민	원		취약계층 비중 (B/A)	%		
			취약계층	원		일반시민 (A)	명		
			취약계층 (B)	명					
기타									
향후 사업 계획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 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2조)
 -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
 -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현장확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 : 1년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의무 (제4조)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진입으로 노력해야 하며,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지정취소 (제5조)
 -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실 입주 조건 및 지원 등 (제6조)
 - 사회적경제 창업예정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희망자,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 경연대회 수상자
 - 마케팅 및 홍보,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65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15 - 2015. 5. 6.(22일간)

○ 직권말소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명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제2003-4호 (2003.12.26)	비트맥스 DVD 영화관	인하로 497-22(구월동)	이*은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15.04.15)

○ 법적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문 의 처 : 032)453-2144 (FAX 453-2139)

2015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15 - 2015. 5. 6.(22일간)

○ 직권말소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명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제2010-4호 (2010.7.22)	로데오 DVD 영화감상실	인하로507번길 14, 402호 (구월동, 탑프라자)	권*근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15.04.15)

○ 법적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문 의 처 : 032)453-2144 (FAX 453-2139)

2015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660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4. 15. ~ 2015. 5. 11.(26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3. 당 사 자

회 사 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비 고
(주)경남산업	이해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7 (고잔동)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의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51의 2(청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4. 5. 11.(월) 14:00 ~ 18: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7층)
 - 주 재 자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박광철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남동구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2-452-2692)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남동구청 기업지원과)으로 문의(032-453-2692)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6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업자(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15. ~ 5. 1. (17일간)

○ 공고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당 사 자	성 명 (상호)	최 * 철 (스카이 PC)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0****-1
	사업장	인천 남동구 북개동로 64, 1층 (만수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5.3.7.일경 ~ 2015.3.8. 22:55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 1만원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한 1만원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에 있는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수령하여 게임진행 시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를 재차 쿠폰으로 입력하여 주고 점수 1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 1차 - 환전 1차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6.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최광준
	주 소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전 화		453-2143
			팩 스		453-2139
	일 시	2015. 5. 13. (수) 09:00 ~ 18:00			
	장 소	남동구청 6층 문화체육과			
주재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조 병 희				

○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서면도착 반드시 확인바람)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2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4.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 04. 13 ~ 2015. 04. 22 (10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식품제조가공업	302	미푸드	김선희	아암대로 1081, 3층(고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2)
 - 청문일시 : 2015. 04. 23.(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5-2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5. 04.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4. 14 ~ 2015. 04. 27(14일간)
3.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식품첨가물제조업	남동구-7	(주)엘에프씨	이*호	은봉로 51 (논현동,21B13L)	
2	용기포장지제조업	13	(주)나토안	김*홍	능허대로 649-86 (고잔동, 131B12L)	
3	식품등수입판매업	남동구222	(주)나토안	김*홍	능허대로 649-86 (고잔동, 131B12L)	
4	식품제조가공업	257	지푸드시스템	오*웅	함박외로 377-35 (남촌동,37B7L)	
5	식품제조가공업	82	이가네식품	이*섭	논현고잔로 128-61 (고잔동)	

4. 처분내용 : 영업신고 직권말소
5. 행정처분일: 2015. 04. 28
6. 처분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8.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4. 2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 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처분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2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11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9-2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89,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33번길	11	2009.11.16	만수서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3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4.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만수서로33번길1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 1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35번길	29	2009.11.16	논현고잔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13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4.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논현고잔로135번길29 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 9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2 (예정지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6	2009.11.16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2015.4.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5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 6을건물번호로부여	구월 보금 자리 유2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1-2 (예정지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12	2009.11.16	인근에위치한 성리초등학교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5.4.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성리로1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 2를건물번호로부여	구월 보금 자리 근생 1-2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7-2 (예정지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5번길	5-5	2009.11.16	선수촌공원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4.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55번길5-5 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 5를건물번호로부여	구월 보금 자리 단독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9-2	2015.4.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3	2015.4.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96	2015.4.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